

#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 9. 7.  
복지도시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0. 8. 25. 마포구청장
- 나. 회부일자 : 2020. 8. 26.
- 다. 상정일자 : 제243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2020. 9. 7.)  
상정, 심사, 의결

##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 가. 제안이유

초고령 사회에 대응하여 노인의 활기찬 노년(Active Aging)과 정든 곳에 나이 들어감(Aging-in-place)을 지향하는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하고 노인뿐만 아니라 모든 구민이 살아가고 싶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및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1) 고령화친화도시 조성의 목적(안 제1조~제4조)
- 2) 고령화친화도시 계획수립(안 제5조)

- 3) 고령화친화도시 조성(안 제6조)
- 4)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연구(안 제7조)
- 5) 국제교류의 활성화, 교육, 평가 등(안 제8조~제10조)
- 6) 고령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안 제11조~제17조)

### 3. 검토보고 (조광현 전문위원)

○ 본 제정조례안은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노인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가 살기 편한 고령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18개의 조문과 1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 주요 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서 제4조까지는

- 본 조례의 목적 및 기본이념과 용어를 정의하고,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제10조까지는

-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실시에 관한 사항과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추진 및 지원활동에 관한 사항, 국제기구 가입 등 국제교류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에서 제18조까지는

- 고령친화도시 조성 위원회 설치 및 구성, 기능에 관한 사항과 위원회 회의 개최, 위원의 임기, 해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행정안전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00년에 고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7%를 넘으면서 고령화사회로 진입하였고, 이후 2017년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의 14%를 넘기며 고령사회로 들어섰습니다. 또한 2025년에는 고령인구가 20%를 초과하는 초고령사회로 들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UN에서 정한 기준에 의하면 고령화사회는 총인구 중 고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일 때, 고령사회는 14% 이상일 때, 초고령사회는 20% 이상일 때를 뜻하며, 여기서 고령인구란 만 65세 이상을 의미함.
- 우리 구도 올해 1월말 기준 65세 이상 인구는 52,382명으로 전체 인구 373,951명 중 약 14.01%를 차지하고 있음. 이러한 인구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노인들이 불편함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정책 및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야 할 것임.
- 고령친화도시란 노인을 포함한 모든 연령층의 주민이 안전하고 건강하며 사회·경제적 참여가 자유로운 환경이 조성된 곳으로,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책 및 인프라·서비스 등이 갖춰진 도시를 의미함.
- 또한, 고령친화도시에서 의미하는 주민은 노령인구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아이부터 노인에 이르는 모든 인구집단을 아우르는 개념으로 나이로 인한 어려움 없이 생애전반에 걸쳐 활기차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라는 측면에서 생애주기별 복지실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안 제8조와 관련된 국제적인 움직임을 살펴보면, 세계보건기구인 WHO는 고령화와 도시화 문제에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대응하고자 2007년부터 활기찬 노년, 지역사회 계속 거주, 세대 통합 등의 주요가치를 실현하고자 8대 영역에 대해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음. 이에 우리 구도 국제적 흐름에 맞춰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사유 중 하나로 판단됨.
-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본 조례안을 토대로 마포구 여건에 맞는 고령친화적인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하고 노인복지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고령친화도시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은 시대적 변화에 합리적으로 대응하는 취지로 판단되며, 고령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 없음